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귀화 심사기간 명문화 및 장애인 등의 귀화 심사 요건 완화>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2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5. 12. 10.
3. 회 부 일: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

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안 제4조제6항), ②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능력을 면제·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귀화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신설></u>	<u>제5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u> <u>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다.</u>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u>른 장애인</u>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u> <u>고 인정되는 사람</u>
--	---

2.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개요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¹⁾ 귀화허가의 종류는 ① 통상적인 기본절차로 진행되는 일반귀화,²⁾ ② 대한민국 국민과 친자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³⁾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인

1)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 ⑤ (생략)

2)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3)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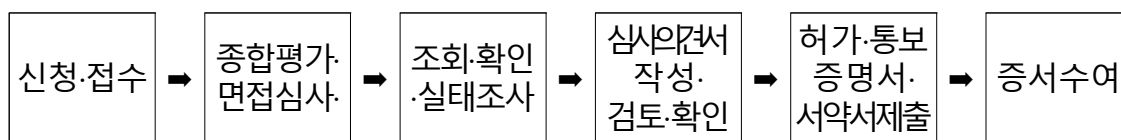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정되는 방식인 특별귀화⁴⁾로 구분됨.

통상적인 국적취득 절차로는 서류 신청·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면접심사, 귀화 요건 심사, 심사결정, 고시 및 통보가 있으며, 귀화허가서를 수령한 사람은 1년 내에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나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게 됨.

[표 1] 귀화허가 심사 개요



또한, 최근 5년간의 국적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는 2021년 10,895명에서 2025년 11,344명으로 매년 1만 1천명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적별로는 2024년의 경우 중국 6,420명, 베트남 2,658명, 필리핀 3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유형별 국적취득 현황('26년 3월 기준)

연도 \ 종류	총 계		귀 화		국 적 회 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21년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년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년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2024년	24,955	14,615	19,470	11,008	5,485	3,607
2025년	23,705	15,381	18,623	11,344	5,082	4,037
2026년 1~3월	4,883	3,837	4,040	3,148	843	689

[표 3] 국적별 국적취득 현황('26년 3월 기준)

국적 \ 연도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6년 1~3월
총 계	귀화	10,895	10,248	10,346	11,008	11,344	3,148
	회복	2,742	3,043	4,203	3,607	4,037	689
중 국	귀화	5,145	4,480	4,904	6,249	6,420	1,865
	회복	185	114	98	92	101	28
베 트 남	귀화	4,225	4,431	3,807	2,951	2,658	670
	회복	14	18	23	20	33	4
필 리 핀	귀화	241	203	243	284	357	107
	회복	25	11	14	9	13	0
태 국	귀화	78	89	110	148	248	61
	회복	6	7	9	4	2	0
우즈베키 스 탄	귀화	97	119	113	107	135	45
	회복	12	10	13	8	11	3

국적\연도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6년 1~3월
몽골	귀화	103	60	126	81	111	44
	회복	3	6	8	7	3	0
파키스탄	귀화	34	26	13	21	39	12
	회복	0	0	0	0	0	0
일본	귀화	20	30	29	24	40	9
	회복	86	94	120	113	131	13
기타	귀화	952	810	1,001	1,143	1,336	335
	회복	2,411	2,783	3,918	3,354	3,743	641

3. 개정안의 검토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⁵⁾,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국적업무 처리 기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을 살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일반귀화 19개월 이상, 간이귀화 12개월에서 19개월 이상, 혼인귀화는 10개월에서 19개월 이상, 특별귀화는 8개월에서 19개월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1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표 4] 국적 심사 기간 현황('26년 4월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기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9개월 이상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9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이상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9개월 이상
혼인귀화 (6조2항)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19개월 이상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조사가 간소화 되는 경우		10개월 이상
특별귀화 (7조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9개월 이상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이상

* 심사기간은 당해년도 누적개념이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 현황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서류보완, 관계기관에 정보조회(범죄·수사경력·신원조회) 등으로 인해 신청자별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심사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일 것으로 추정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귀화허가 심사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하는 것을 법정화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귀화심사를 위한 최소 소요기간이 일반귀화, 간이귀화 기준 19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의 처리기간 설정·공표에 관한 사항을 두되⁶⁾ 귀화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⁷⁾ 실제 법무부가 [표 4]와 같이 매달 국적심사 기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서 심사 처리 시한을 공표하게 하고 이를 단축시키는 등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공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사회적 배려자에게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능력을 면제·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처한 개별적인 현실

- 6)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최저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귀화 요건 완화를 통해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약자를 포용하는 한편 반대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라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은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장애인 판정 절차부터 마련하고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장애의 종류·등급별로 완화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는 현재 귀화허가 심사 시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적 취득 신청 시 우편 접수를 허용하거나, 혼인 귀화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간소화나,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면제하는 등 장애인 귀화허가 시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057

8)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6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제18조(종합평가의 면제), 제20조(면접심사의 면제) 등을 통해 장애인 귀화 허가 시 배려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